
강원대학교병원 연간 소방시설점검 용역

과업지시서



2021. 01.

과업지시서

- 용역명 : 2021년 강원대학교병원 연간 소방시설 점검 용역
- 기간 : 착수일로 12개월 (2021년 05월 ~ 2022년 04월까지)
- 목적

강원대학교병원 내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『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9조제1항에 의한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여부 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·수행하여 관련 법규 충족 및 완벽한 소방·방재체계 구축을 통하여 유사 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.

4. 관련근거

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
(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)
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
(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)
-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
(점검사항·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)
- 기타 소방관련법규

5. 대상시설

- 부지 :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
- 대상물
 - 본관동 38,823.01 m²
 - 암노인센터 22,255.30 m²
 - 어린이병원 14,322.47 m²
 - 장례식장 2,092.37 m²
 - 철골주차장 7,484.87 m²
 - 사이트론 연구소 380.50 m²

6. 용역공급 및 계약범위

-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 부지 내 대상물에 대한 법정점검(종합/작동) 및 정기점검(비상점검, 응급조치 등)을 용역범위로 한다.

- 나. 위 점검 중 간단한 회로 단선 및 소모품 교체 등은 이상 발견 시 즉각 조치하여
이상이 없도록 하며, 소방시설기준에 맞지 않을 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다. 착수계 및 보고서(완료계) 제출 (발주처 및 소방서)

7. 점검자의 자격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9조
에 의한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.

8. 착수계 제출

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점검자에 대한 자격, 경력사항을
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점
검에 착수하여야 한다.

-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1부
-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
- 점검공정표 1부.
- 인원투입계획서 1부.
-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.
- 기타 관련 증빙서류

7. 인력 및 점검방법

- 가.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본 용역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 또는 기구
일체를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, 그 세부사항은 소방청이 정하여 고
시하는 『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』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① 법정 점검 : 종합정밀점검(5월), 작동기능점검(11월) * 4인기준 점검, 변경 시 사전협의
- ② 정기 점검 : 매월 2회
- ③ 비상 점검
- 대상 설비에 대한 긴급 점검사항 발생 또는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
및 공휴일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1시간 이내 출동하여, 긴급조치 실시한
다. 이때의 보수 대가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하며, 긴급보수를 위해 사용되
어진 부품은 별도 협의에 의해 산정 후 처리한다.
 - 비상 점검을 위해 수급인은 전담 직원을 지정하되, 발주자의 소방시설을
정확히 숙지하는 직원으로 정기 점검 담당자를 포함하여 임명한다.
 - 또한, 원내 각종 평가 및 행사 등에 대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
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수시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수급인은 즉각
이행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필요한 점검 기술인력 및 점검소요 일수는 소방시설
점검 기술용역 시행방법은 『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

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』에서 정한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- 다.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수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.
- 라. 제출서류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설비 보수상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임의로 관련자의 현장투입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, 이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마. 소방시설 현장대리인은 점검 용역기간(용역 중지 기간은 제외)동안 본 점검업무를 철저히 수행함은 물론, 점검시험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소방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8. 지시감독

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강원대학교병원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“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9. 책 임

- 가.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 1호에 위탁한 업무를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나. 수급인은 계약내용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다. 수급인은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에 참여하는 소속 직원의 관리감독은 모두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.
- 라. 수급인은 점검 진행 중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비밀사항은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0. 안전관리

- 가. 수급인은 소방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기 전 관계직원(감독자) 반드시 사전 업무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나. 수급인은 소방시설점검을 실시하기 전 제반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원내 진료 및 업무에 지장을 주는 작업(소음유발점검 등)은 사전 감독자(관계직원)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
- 다. 수급인은 소방점검에 참가하는 직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, 시설물 점검 전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, 만약 위험하다고 판단

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감독자(관계직원)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.

- 라. 계약자는 점검 내용을 기록하여 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마.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에 조치하고, 본 과업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인명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 져야한다.
- 바. 소방점검 완료 후 소방시설을 원상복구 및 정리하여 시설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11. 점검결과 등의 보고 (완료계)

- 가. 계약상대자는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“갑”에게 설명 하여야 하며, 소방시설 법정점검(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)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할소방서 (1부) 및 “갑”에게 (2부)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정기점검은 해당되는 달의 25일 이전까지 제출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 시에는 “발주자”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한다.

12. 기술교육

수급인은 발주처의 시설관리 직원에게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소방 교육을 실시하고, 발주처의 요구 시 이론, 실기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3. 금지사항

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가. 원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
- 나. 원내 타 근무자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
- 다.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제한구역에 출입 또는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
- 라.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14. 도급

본 용역에 대해서는 도급을 할 수 없다.

15. 문서 및 서류의 귀속

- 가. 본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문서 및 도면 등을 일체 “갑”的 소유로 하고 “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와 동시에 “갑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도면, 문서의 일체를 “갑” 허락 없이는 복사, 촬영 등의 방법으로 사본을 작성할 수 없다.

16. 계약의 해제 및 해지

- “갑”은 다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음과 수 있다.
- 가. 계약상대자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
 - 나.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
 - 다.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도급을 주었을 때

17. 규정적용

본 과업 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갑”이 정한 계약사무처리 규정 및 관계 규정에 따르고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계약 일반관례에 따른다.